

##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 제정이유

- 파주시민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출하고 제각기 흩어져 있는 자원들을 미래지향적인 이미지 목표에 따라 통합, 우리시의 정서와 통일성을 확보하여 새로운 미래상을 정립하는 City Identity Program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CIP사업지도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함.

### □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CIP사업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함을 정함.

(안제2조)

- 1) 과업의 기본 및 응용요소의 개발방향에 대한 전문적 조언 및 지원
- 2) 개발된 CIP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의 적용·보급활동
- 3) 개발(안)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4) 보고회·공청회등에서 제시된 의견의 종합검토 및 반영여부 조언

나. CIP사업지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3조)

-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 파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 사항을 정함.(안제8조)

## □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파주시 CIP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적인 조례안으로 21세기 지식경쟁의 지방자치시대에 타 도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함은 물론 파주시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출하고 제각기 흩어져 있는 자원들을 미래지향적인 이미지 목표에 따라 통합, 우리시의 정서와 통일성을 확보하여 새로운 미래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